

#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0월 18일)  
상정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)

### □ 제안이유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공포되면서 동 조례 설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변경되었으며, 총 50억원의 기금을 2008년까지 조성코자 하였으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로 조성완료 년도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(안 제1조)

나. 기금의 조성 완료년도를 2008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  
(안 제3조 제1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앞으로 기금목표액을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?</li> <li>○ 기금이자수입 적립추이를 볼 때 매년 평균 6천여만이 적립되고 있어 기금 목표년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?</li> <li>○ 체육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금조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봄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금이자수입의 20%를 매년 적립 하고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본예산 출연 을 통해 달성할 계획임.</li> <li>○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하고 있으나, 이자수입적립액과 출연금 추이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음.</li> <li>○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 하겠음.</li> </ul>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63호
의결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완료 연도를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8년에서 2015년으로 7년을 연장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조항을 제142조로 변경함. (안 제1조)
-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완료 연도를 2008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함.(안 제3조제1항)

##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4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운  
용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운용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 
“세입·세출외”를 “세입·세출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6조  
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2002년 조성완료된 30억원이외에 2003년부터  
2008년”을 “2002년에 조성이 완료된 30억원 이외에 2003년부터 2015  
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  
조제6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20%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고, “제5조의 규  
정에 의하여 매년도 사용후”를 “제5조에 따라 매년도 사용 후” 하며,  
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위원회 설치”를 “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 
“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”를 “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  
협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  
원회의 심의를 거친후”를 “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”로 하고, “40일 전”  
을 “40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  
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 
항 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

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금에 의한”을 “기금의” 하고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출납폐쇄후 80일이내”를 “출납폐쇄 후 80일 이내”로 하고, “120일전”을 “12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목적외”를 “목적 외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적정히”를 “적정하게”로 하고, “비치하며”를 “비치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관계 공무원에게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관계규정”을 “관계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관계규정의 준용등)”을 “(관계 규정의 준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관리에 관하여는”을 “관리는”으로 하며,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”을 “제1항 이외의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②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적립은 매년도 이자발생 총액의 20%를 반드시 재적립하여야 하며,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사용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적립하여 원금화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기타 수입금이 있는 경우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계획)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	<p>② 제5조제6호에 따른----- ----- 20퍼센트----- --제5조에 따라 매년도 사용 후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그 밖의----- -----.</p> <p>제4조(심의 및 기금운용계획) ①----- --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협회의 심의를 거친 후----- ----40일 전----- -----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----- -----다음 각 호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해당연도-----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4. <u>기타</u>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제5조(기금의 사용) ① (생략) ② <u>기금에 의한</u> 이자수입금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 8. <u>기타</u>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6조(결산 및 보고)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7조(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) 시장은 기금이 <u>제5조의 규정</u>에 의한 사업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<u>목적외</u>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<u>적정</u>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<u>비치</u>하며 기금에</p>	<p>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제5조(기금의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기금의</u>----- 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제6조(결산 및 보고) ----- -----<u>출납폐쇄 후 80일 이내</u> ----- ----- <u>120일 전</u>----- -----.</p> <p>제7조(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) - -----<u>제5조에 따른</u> ----- -----<u>목적 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적정하게</u>----- -----<u>비치하여야 하며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감독) ①시장은 <u>관계공무원</u>으로 하여금 기금지원사업자의 사업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금지원사업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<u>관계규정</u>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<u>관계규정의 준용등</u>) ①기금의 <u>관리에 관하여는</u>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<u>예에 의한다</u>.</p> <p>②<u>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</u>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9조(감독) ① -----<u>관계 공무원</u>에게----- ----- -----<u>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관계 규정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<u>관계 규정의 준용 등</u>) ① - --<u>관리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예에 따른다</u>.</p> <p>② <u>제1항 이외의 사항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<u>필요한</u>----- -----.</p>